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전액 또는 일부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또한, 연금전환시점에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후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은 연금전환시점에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연금전환시점에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상속연금의 경우 제4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연금개시일 전에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4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연금전환일이라 하고, 이 특약에 대한 연금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하며,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의 보험료를 납입할 때 연금지급방법(종신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지급기준표((별표1)참조)에 의거하여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 산출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은 연금전환일로부터 10년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3.0%, 10년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
공시기준이율 = 0.5 × 시장금리 + 0.5 × 운용자산이익률
(2)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를 반영한 것으로서,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 직전 3개월의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을 각각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합니다.

$$\text{시장금리} = \frac{A_1 + A_2}{2}$$

A_1 : 통화안정증권(364일)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_2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text{가중이동평균이율}(A_i) = \frac{Mi(-3) + Mi(-2)\times 2 + Mi(-1)\times 3}{6}$$

각각의 이율에 대하여 $Mi(-3)$은 직전 3개월, $Mi(-2)$은 직전 2개월, $Mi(-1)$은 직전 1개월 이율

1) 통화안정증권(364일) 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364일)의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2) 국고채수익율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합니다.
3)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산출 월의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수익율」에서 「투자지출율」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율 및 투자지출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

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합니다. 단, 비정기적인 수익 및 비용(유가증권평가손익 및 매각손익 등)은 제외합니다.

$$\text{운용자산수익율} = \frac{(2\times\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times(12/6)\times 100}{[\text{직전 7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ext{투자지출율} = \frac{(2\times\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times(12/6)\times 100}{[\text{직전 7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비용})]}$$

4)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운용자산의 장래 예상수익률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공시이율이라 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 상품(제1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제7조【해약환급금】

①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8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9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생존연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급여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생존연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생존연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중에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1조【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1)

연금지급 기준표

급 부 명 칭	연금지급방법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생 존 연 금 (약관 제5조)	종신연금형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년보증지급 / 20년보증지급)
	상속연금형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지급]

주) 1.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최저한도 :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3.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2. 종신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일시금수령 신청시 신청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3.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생존연금 (제5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7조제1항)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8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